

『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11월 1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2월 5일

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유 영 명

나. 제안이유

○ 체미정 주변정비사업

구미가 배출한 야은 길재선생의 정신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
재조명하고 의의를 계승할 수 있는 공간 마련

○ 신동 생활체육시설 조성

체계적 생활체육시설 구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
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

다. 주요내용

[취득재산]

○ 토 지

- 규 모 : 77,388㎡ (남동동 248번지 외 13필지)
- 기준가격 : 2,803,273천원

○ 건 물 (신 축)

- 규 모 : 1,628m²(서원 등 12개동)
- 기준가격 : 9,768,000천원

□ 채미정 주변정비사업

- 토 지 : 57,474m² (남통동 248번지 외 6필지)
- 건 물 : 1,628m² (서원 등 12개동)
- 기준가격 : 10,579,873천원

□ 신동 생활체육시설 조성

- 토 지 : 19,914m² (구미시 신동 637-1 외 6필지)
- 기준가격 : 1,991,400천원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제1항 및 제3항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및 제4항
- 「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5조, 제1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성 애

○ 본 계획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첫 번째 안건인 채미정 주변정비사업을 위한 부지 남통동 248번지 외 13필지(면적 77,388m²)를 28억원으로 매입하는 건과 서원, 교육관, 전시관 등의 건물(면적 1,628m²)을 98억원으로 신축하는 건이며,
- 두 번째는 신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부지 신동 637-1 외 6필지(면적 19,914m²)를 20억원(가 감정가)으로 매입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▪ 본 계획안은

채미정 주변정비사업은 구미가 배출한 야은 길재 선생의 정신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의의를 계승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 부지 매입과 서원, 교육관, 생활관, 전시관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써,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,

- 신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건은 체계적 생활 체육시설 구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,
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